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약바이오 분야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고,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탁·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(6급 13명)을 증원하며,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창업벤처혁신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「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 2026. 3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,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(9급 1명),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(9급 1명),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(9급 1명)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(8급 1명)을 각각 과학기술직군·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,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인 중소기업정책실·소상공인정책실 및 상생협력정책국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,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의 하부조직인 사업영역조정과의 명칭을 상생협력지원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3. 6. ~ 3. 1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8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성장지원에 관한 사항

제11조제8항제11호를 삭제한다.

제11조의2제2항 중 “사업영역조정과”를 “상생협력지원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업영역조정과장”을 “상생협력지원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상생결제 시스템 운영 및 확산

1의3. 대·중소기업 간의 성과공유제의 확산 지원

제5장(제18조)을 삭제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516”을 “51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509”를 “510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“180”을 “181”로, 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“10”을 “11”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7”을 “6”으로

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516”을 “51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509”를 “510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“191”을 “192”로, 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“10”을 “11”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7”을 “6”으로 한다.

별표 5 중 총계 “395”를 “40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95”를 “408”로 하며, 행정주사·세무주사·통계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“150”을 “163”으로, 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“23”을 “24”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4”를 “3”으로 한다.

별표 5의2 중 총계 “395”를 “40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95”를 “408”로 하며, 행정주사·세무주사·통계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“146”을 “159”로, 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“23”을 “24”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4”를 “3”으로 한다.

별표 6 중 행정서기·공업서기·임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“26”을 “27”로,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“19”를 “20”으로 하며, “전기운영서기 1”을 삭제하고, 사무운영서기보 “4”를 “3”으로 한다.

별표 6의2 중 행정서기·공업서기·임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

“26”을 “27”로,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“19”를 “20”으로 하며, “전기운영서기 1”을 삭제하고, 사무운영서기보 “4”를 “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중소기업정책실) ① ~ ⑦ (생 략) ⑧ 전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~ 12. (생 략) ⑨ ~ ②② (생 략)	제9조(중소기업정책실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성 장지원에 관한 사항</u> 4. ~ 12. (현행과 같음) ⑨ ~ ②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소상공인정책실) ① ~ ⑦ (생 략) ⑧ 지역상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0. (생 략) <u>11.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</u> 12. ~ 28. (생 략) ⑨ ~ ⑬ (생 략)	제11조(소상공인정책실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12. ~ 28. (현행과 같음) ⑨ ~ ⑬ (현행과 같음)
제11조의2(상생협력정책국) ① (생 략) ② 상생협력정책국에 상생협력 정책과, <u>사업영역조정과</u> 및 불 공정거래개선과를 두며, 각 과 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	제11조의2(상생협력정책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상생협력지원과</u> ----- ----- -----

관·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③ 상생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·2. (생 략)

3. 상생결제 시스템 운영 및 확산

4. ~ 7. (생 략)

8. 대·중소기업 간의 성과공유제의 확산 지원

9. ~ 17. (생 략)

④ 사업영역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2. ~ 24. (생 략)

⑤ (생 략)

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

제18조(평가대상 조직)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

-----.

③ 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9. ~ 17. (현행과 같음)

④ 상생협력지원과장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상생결제 시스템 운영 및 확산

1의3. 대·중소기업 간의 성과공유제의 확산 지원

2. ~ 24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<u>다.</u>	
-----------	--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3]

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516</u>	<u>517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509</u>	<u>510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의료기술사 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	<u>180</u>	<u>181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 · 세무서기보 · 통계서기보 · 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<u>10</u>	<u>11</u>	+1
·	·	·	
·	·	·	

사무운영서기보	<u>7</u>	<u>6</u>	-1
.	.	.	
.	.	.	

[별표 4]

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516</u>	<u>517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509</u>	<u>510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 공업사무관·의료기술사 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 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 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	<u>191</u>	<u>192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 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<u>10</u>	<u>11</u>	+1
·	·	·	
·	·	·	
사무운영서기보	<u>7</u>	<u>6</u>	-1

	.	.	.	
	.	.	.	

[별표 5]

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(제16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395</u>	<u>408</u>	+13
일반직 계	<u>395</u>	<u>408</u>	+13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·세무주사·통계 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 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 ·방송통신주사 또는 공 업연구사	<u>150</u>	<u>163</u>	+13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 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<u>23</u>	<u>24</u>	+1
·	·	·	
·	·	·	
사무운영서기보	<u>4</u>	<u>3</u>	-1

[별표 5의2]

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(제16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395</u>	<u>408</u>	+13
일반직 계	<u>395</u>	<u>408</u>	+13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·세무주사·통계 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 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 ·방송통신주사 또는 공 업연구사	<u>146</u>	<u>159</u>	+13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 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<u>23</u>	<u>24</u>	+1
·	·	·	
·	·	·	
사무운영서기보	<u>4</u>	<u>3</u>	-1

[별표 6]

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·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
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(제16조제2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임업 서기 · 시설서기 또는 전 산서기	<u>26</u>	<u>27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	<u>19</u>	<u>20</u>	+1
·	·	·	
·	·	·	
<u>전기운영서기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·	·	·	
·	·	·	
사무운영서기보	<u>4</u>	<u>3</u>	-1

[별표 6의2]

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·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
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(제16조제2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임업 서기 · 시설서기 또는 전 산서기	<u>26</u>	<u>27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	<u>19</u>	<u>20</u>	+1
·	·	·	
·	·	·	
<u>전기운영서기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·	·	·	
·	·	·	
사무운영서기보	<u>4</u>	<u>3</u>	-1